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 부산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장학금(이하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반환 시 수혜횟수 관리 설명

본인은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하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2.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택 1)

본인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하길 희망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선택	동의내용
☐ 수혜횟수 누적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학적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3.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장학담당 등)

(서명 또는 인)